(첨부1)

[개인정보처리방침] 신·구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	비 고
제6조의2 〈신설〉	제6조2(지문 정보의 처리) 1. 당행은 원칙적으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기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〈별첨3〉과 같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〈2018.08.24. 개정〉	신설
부칙 〈신설〉	부칙 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 신설
	〈별첨3〉〈개정 2018.08.24.〉 지문정보 처리방침 1. 개요 ㅁ (목적)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에 의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원칙에 따라 저축은행이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 정보 신규수집의 제한과 기 보유 중인 지문 정보의 파기 방안을 수립하여 지문정보의 오·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2. 세부 기준 가 지문정보 수집 금지 ㅁ 신규 신분증 사본 징구시 지문정보 수집 금지 ○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 징구 자제 ○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 징구시 - 복사하여 보관하는 경우 지문정보는 수집하지 않도록 지문정보를 가리고 복사 - 스캔을 통해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가리고 스캔처리 또는 스캔 후 지문정보 마스킹 처리 나 기 보유 지문정보 처리 방안 ㅁ 기 보유 지문정보 처리 방안 ○ 전자적 형태의 지문정보 : 2019년이내 파기 ○ 비전자적 형태의 지문정보 : 문서 보존기한이내 파기 (서류보관 창고에 CCTV 설치, 출입관리 대장 비치 등 접근통제 강화)	별첨 신설